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0
----------	-----

제출년월일 : 1999.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법률제5748호, 1999. 2. 5)에 따라 공공요금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 및 경영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 나.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를 두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 다.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1조제1항)
- 라.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설치 의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9조제1항, 제2항)
- 마.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 및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을 22인이내에서 25인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등에서 추천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 제3항)
- 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삭제하고 시 관여 요금중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토록 함 (안 제32조제2항, 제3항)
- 사.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중요상정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제4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소비자단체·사업자”를 “소비자단체”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22인”을 “25인”으로 하고 제3항중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를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위원의”를 “위촉직위원의”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미만의 경우”를 “미만의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으로하여 제2항으로한다.

제34조제3항중 “실무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신 설)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소비자단체로..... 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이 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25인.....
②(생략)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u>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u>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u>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u> 자로 한다.	③.....		<u>위촉직위원은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u>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생략)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생략)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1항6호의 경우에는 10%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를 받는다.	②제1항6호의 경우에는 10%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를 받는다.	②.....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요금 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역제미만이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요금 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역제미만이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u>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u>
제34조(실무위원회) ①~②(생략)	제34조(실무위원회) ①~②(생략)	제34조(실무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u>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u>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③.....		<u>실무위원회 위원장</u>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